

2013년도 문화재위원회

**제6차 부형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**

- ▣ 회의일시 : 2013. 11. 8. (금요일), 14:00~17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임돈희, 김영운, 김운미, 박성실, 박형철,  
이영희, 인묵, 전경욱, 최성자, 최응천,  
함한희(이상 11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1	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	공개
2	중요무형문화재 제82-2호 ‘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’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	공개
3	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‘양주별산대놀이’ 보유단체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	비공개

## 【검토사항】

1	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‘처용무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	공개
2	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‘조각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	공개
3	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‘악기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	공개
4	‘수륙재’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	공개
5	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‘양주소놀이굿’ 보유자 인정 예고	공개
6	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	공개
7	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검토	비공개

## 【보고사항】

1	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내 전승자 충원 방침 검토 관계전문가 회의결과 보고	비공개
2	‘채화칠장’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관련 이의제기 사항 보고	비공개

## 심의사항

안건번호 무형2013-06-001

### 1.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

#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에 대하여  
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전수교육조교 남기문, 지운하에 대한  
사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(1964.12.7. 꼭두각시놀음 지정, 1988.8.1. 명칭변경)
- 전승자 현황
  - 보유자(1명) : 박용태(‘44년생, 남 / 꼭두각시놀음, 덧뵈기, 풍물, ’02.4.25. 인정)
  - 전수교육조교(3명) : 남기문(‘58년생, 남 / 꼭두각시놀음·장고, ’90.10.10 선정)  
지운하(‘47년생, 남 / 풍물, ’96.5.1 선정)  
진명환(‘48년생, 남 / 소고, ’02.2.5 선정)
  - 보유단체 : 남사당놀이보존회(‘86.11.1 인정)

##### (2) 사건경과

- 감사원이 남사당놀이 보존회(사단법인 남사당) 비위 의혹을 접수하고,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에 이첩(2012.8.22)
- 해외공연비 사기 및 이수증 부정발급에 대한 검찰고발(2012.10.18)
- 남사당놀이보존회 단체 및 사건 연루 전승자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(2012.12월)
- 검찰약식기소(2013.6월) 및 정식재판(2013.9.12. 선고)

-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회의(2013.9.13) 보고에 따라 해당 사건 선고 후 남사당놀이보존회 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지급 재개(2013.9월)

(3) 형사사건 판결내용

- 혐의내용 :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
- 정식재판 결과 : 벌금형
  - 상소포기하여 1심 판결 확정(2013.9.19.)

(4) 참고사항

- 관련 규정
  - **문화재보호법 제31조(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)**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2.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  - **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(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)** 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유사 사례
  - 2007년 ○○○○○ 전수교육조교 김□□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정 해제
  - 2007년 ○○○○○○○ 전수교육조교 이□□이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정 해제

라. 검토의견

-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.

**마. 의결사항**

- 남기문, 지운하의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**바. 특기사항 : 없음**

## 2. 중요무형문화재 제82-2호 ‘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’ 전수교육 조교 선정 해제

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82-2호 ‘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’ 전수교육조교  
선정 해제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중요무형문화재 제82-2호 ‘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’ 김매물 전수교육조교가  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4호 ‘꽃맞이굿’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해당 전수교육  
조교가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 
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82-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
- 지 정 일 : 1985.2.1.
- 전승자 현황
  - 보유자(1명) : 김금화(‘31년생, 여 / 무녀, ’85.2.1. 인정)
  - 전수교육조교(3명) : 김금전(‘39년생, 여 / 장고, ’92.7.1 선정)  
김매물(‘39년생, 여 / 무녀, ’96.5.1 선정)  
오태운(‘38년생, 남 / 배치기소리, ’07.3.12 선정)
  - 보유단체 :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(‘86.11.1 인정)

#### (2) 추진경과

- 인천광역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보고 접수(2013.7.12.)
  - 지정명칭 :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24호 ‘꽃맞이굿’
  - 보 유 자 : 김매물(여, 1939.9.2일생)
  - 인 정 일 : 2013.4.30.

- 서해안배연신긱 및 대동긱 보존회로부터 자료 접수(2013.7.31.)
  - 서해안배연신긱 및 대동긱 보존회 전수교육조교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의견 및 보존회 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적 제출 (2013.7.31.)
- 해당 전수교육조교 사퇴서 제출(2013.10.18)
  - 해당 전수교육조교가 자진 사퇴서를 보존회를 경유하여 제출

#### 라. 검토의견

-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시·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. 또한 해당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.

#### 마. 의결사항

- 김매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82-2호 ‘서해안배연신긱 및 대동긱’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함.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#### 바. 특기사항 : 없음

**3.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‘양주별산대놀이’ 보유단체 문화재청 소관  
비영리법인 설립 허가**

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의2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

## 검토사항

안건번호 무형2013-06-004

### 1.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‘처용무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

#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‘처용무’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에 따라 고령 보유자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
- 지정일 : 1971. 1. 8.
- 전승자현황
  - 보유자(2명) : 김 용(‘33년생, 남 / ’71.1.8 인정), 김중섭(‘40년생, 남 / ’07.10.29 인정)
  - 전수교육조교(2명) : 이진호(‘55년생, 남 / ’07.10.29 선정), 인남순(‘55년생, 여 / ’07.10.29 선정)

##### (2) 조사 개요

- 조사대상자 : 김용(‘33년생, 남 / ’71.1.8 인정)
- 일시/장소 : 2013.10.20(일) / 국립국악원 우면당
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3명
- 조사내용 : 공개행사 모니터링과 병행하여, 해당 보유 기·예능의 실연 및 전수교육의 정상적 실시 여부 등 조사
- 조사방법 : 공개행사에 대한 현지조사 및 대상자 면담 등

(3) 조사결과

조사자	검토의견
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연결과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박과 하단전의 힘이 중단전, 상단전을 통해 뻗어 나가는 동작이 일취월장하였음.</li> <li>○ 월 2회 보존회 전승활동과 그 외 장소에서 주 1회 이상 15명 이상을 지도하고 있고 2013년 8월에도 제자들을 지도하여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공연도 하였음. 향후 처용무의 보존과 전승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임.</li> </ul>
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용 보유자는 흰색 처용무를 담당함. 30분간의 공연을 모두 잘 소화했음. 연세의 문제로 중심을 잃을 뻔한 적이 3회 정도 있었음. 이는 타 보유자에 비해 못한 것은 아님. 박자에 맞는 뿌림과 율동이 적합하였음.</li> <li>○ 현재 보존회 외에서도 처용무를 지도하고자 하는 열의가 큼.</li> </ul>
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번 공연에서 김용 보유자는 생각 이상으로 공연을 잘 수행하였음. 처용무 연행에 있어서 연령에 비해 박자와 동작은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.</li> <li>○ 김용 보유자는 주 1회 연습을 수행하고 있고, 전승과정에 있어 연령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, 이는 시용무보를 바탕으로 3D 작업이 완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자료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.</li> <li>○ 김용 보유자의 향후 활동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</li> </ul>

(4) 참고사항 :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

- 2010년 : 공개행사에서 처용무 춤을 추지 않음.
- 2011년 : 공개행사에 불참
- 2012년 : 고령에도 불구하고 애쓰신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유자의 발디딤, 굴신, 한삼뿌리기 등의 실연 정도는 실망스러웠음. 다섯 처용 간의 호흡도 맞지 않음.

라. 검토의견

- 명예보유자 인정조사 결과 처용무 예능보유자로서 전수교육, 공개행사 등의 전승활동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,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보유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.

- 따라서, 김용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, 다만 김용 보유자가 고령임을 감안, 정상적인 전승활동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.

**마. 의결사항**

-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‘처용무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를 부결함
  -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무리가 없음
- 해당 보유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공개행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부결 11명

**바. 특기사항 : 없음**

## 2.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'조각장'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

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'조각장'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'조각장' 보유자 김철주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('13.10월 신청)가 접수됨에 따라,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
- 지정일 : 1970. 7. 22.
- 전승자 현황
  - 보유자(1명) : 김철주(남, '33년생, 조각 / '89.12. 1 인정)
  - 전수교육조교(1명) : 남경숙(여, '50년생, 조각 / '96. 2. 1 선정)

#### (2) 확인조사 개요

- 기 간 : 2013. 9. 11.(수)
- 장 소 :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
- 확인자 : 강경보 사무관(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)
- 조사대상자 : 김철주(남, '33년생/ '89.12. 1 보유자 인정)

#### (3) 확인결과

- 김철주 기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,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

(4) 우리 청 검토의견

-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, 해당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라. 의결사항

- 김철주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‘조각장’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마. 특기사항 : 없음

### 3.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‘악기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

#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‘악기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‘악기장’ 보유자 이영수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(‘13.10월 신청)가 접수됨에 따라,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
- 지정일 : 1971. 2. 24.
- 전승자 현황
  - 보유자(4명) : 고흥곤(남, ‘51년생, 현악기 제작 / ‘97. 3.24 인정)  
이영수(남, ‘29년생, 현악기 제작 / ‘91. 5. 1 인정)  
이정기(남, ‘57년생, 북 제작 / ‘12.11.20 인정)  
김현곤(남, ‘35년생, 편종·편경 제작 / ‘12. 7.23 인정)
  - 전수교육조교(4명) : 김영렬(남, ‘50년생, 현악기 제작 / ‘04. 3.20 선정)  
이동윤(남, ‘56년생, 현악기 제작 / ‘95. 8. 1 선정)  
윤중국(남, ‘61년생, 북 제작 / ‘95. 8. 1 선정)  
윤 신(남, ‘63년생, 북 제작 / ‘97. 8. 1 선정)

##### (2) 확인조사 개요

- 기 간 : 2013. 9. 11.(수)
- 장 소 :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
- 확인자 : 강경보 사무관(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)
- 조사대상자 : 이영수(남, ‘29년생/ ‘91. 5. 1 보유자 인정)

(3) 확인결과

- 이영수 기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으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렵고,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

(4) 우리 청 검토의견

-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, 해당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**라. 의결사항**

- 이영수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‘악기장’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**마. 특기사항 : 없음**

#### 4. '수륙재'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

##### 가. 제안사항

'수륙재'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 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나. 제안사유

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(2013.9.13)에서 '수륙재'의 중요  
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토록 의결함에  
따라,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 
지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.

##### 다. 주요내용

###### (1) 신청개요

- 신청종목 : 수륙재(水陸齋)
- 신청자
  - (가) 백운사 아랫넉수륙재보존회(대표 : 김차식(석봉))
    - 경상남도지사 추천(2007. 11)
  - (나)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(대표 : 김종민(원명))
    - 강원도지사 추천(2011. 1)
  - (다) 진관사 수륙재 보존회(대표 : 계호)
    - 서울특별시시장 추천(2011. 9)

###### (2) 추진경과

- 2012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 계획에 포함('12.1월)
- 수륙재 종목 지정가치 서면조사 실시('12.4월)
- 2012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('12.5.18) 검토
  - 수륙재의 신규종목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
- 지정조사 대상 3개 사찰에 대한 조사계획 통지('12.5.31)



- 현지조사 실시('12.10.)
  - 조사대상 : 삼화사 국행수룩대재보존회 (강원 동해시 삼화동)  
백운사 아랫녘 수룩재 보존회 (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)  
진관사 수룩재 보존회 (서울 은평구 진관동)
  - 조 사 일 : 2012.10.19 ~ 21 (3일간/삼화사)  
2012.10.13. ~ 14 (2일간/백운사)  
2012.10.13. ~ 14 (2일간/진관사)
  - 조사방법 : 현지조사(참관 및 인터뷰), 확인조사 필요시 추가 현지조사 실시
-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검토(2013.3.8.)
  - '수룩재'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,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

지정명칭	구분	보유단체	설립연월	주소
수룩재	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	진관사국행수룩재 보존회	2002	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
		삼화사국행수룩재 보존회	2009.3.31.	강원 동해시 삼화동 산176

- 관보공고(관보 제17972호/ '13.3.14./문화재청 공고 제2013-99호)
- 지정예고 결과 : 이의제기 접수(6건)
-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심의('13.5.24)
  - 보류함
    - 조사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대상 3개 사찰을 재조사하여 검토  
토록 함
  - 문화재위원회 결과를 조사대상 3개 단체에 통지('13.6.3.)
-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검토('13.7.12.)
  -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접수(5건)됨에 따라 이를 검토
  - 검토결과 :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 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토록 함.
- '수룩재'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이의제기 검토 소위원회('13.8.22)
  - 조사자 중 진관사와 관련된 제척사유자는 □□□과 □□□이고, 삼화사와  
관련된 제척사유자는 □□□임.
  - 따라서 상기 제척자가 2012년 10월에 실시한 수룩재의 중요무형문화재  
지정을 위한 조사에 심사자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실시함.
-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 보고(2013.9.13)
  -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(원안 접수).

### (3) 현지조사

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9명
- 조사대상 : 마산 백운사, 서울 진관사, 동해 삼화사
- 조사일시/장소 : 2013. 10. 10~12 / 마산 백운사  
2013. 10. 12~13 / 서울 진관사  
2013. 10. 18~20 / 동해 삼화사

### 라. 검토의견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마. 의결사항

- ‘수륙재’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.
  - 지정명칭은 수륙재로 하며, 세부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이 함.
    - 삼화사 수륙재 :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
    - 진관사 수륙재 : 진관사 수륙재보존회
    - 백운사 수륙재 : 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
  - ※ 단 백운사 수륙재는 지방 무형문화재(경남 제22호 불모산영산재)와 동일한 단체로 판단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70호(시·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) 제1항에 의거하여, 예고 기간 중에 보유단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최종 심의토록 함.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조건부가결 11명

### 바. 특기사항 : 없음

## 5.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‘양주소놀이굿’ 보유자 인정 예고

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‘양주소놀이굿’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‘양주소놀이굿’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
- 지정일 : 1986. 11. 17.
- 전승자 현황
  - 보유자 : 없음
  - 전수교육조교(3명) : 김봉순(‘36년생, 여 / 만신, ’90.10.10. 선정),  
신성남(‘56년생, 남 / 큰소, ’05.9.23. 선정)  
한애옥(‘54년생, 여 / 만신, ’05.9.23. 선정)

#### (2) 추진경과

- 2013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(‘13.1월)
- 현지조사 실시(‘13.9.27.)

#### (3) 조사개요

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5명
- 조사대상자 : 전수교육조교 1명
- 조사일시 : 2013.9.27. 14:00~16:00
- 조사장소 : 양주소놀이굿 전수회관(경기 양주시 백석읍)

- 조사내용 :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(단체)의 지표항목
- 조사방법 : 실연에 대한 기량평가 및 이론·전승 관련 면담
- 조사제외 항목
  - 지표제외 항목 : 1-1-3.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
  - 1-1-4.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
  - 3-1. 보유단체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

**라. 검토의견**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

**마. 의결사항**

- 김봉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‘양주소놀이굿’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**바. 특기사항 : 없음**

## 6.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

### 가. 제안사항

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에 대하여  
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보유자 박용태에 대하여 사법판결이  
확정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(1964.12.7. 꼭두각시놀음 지정, 1988.8.1. 명칭변경)
- 전승자 현황
  - 보유자(1명) : 박용태(‘44년생, 남 / 꼭두각시놀음, 덧뵈기, 풍물, ’02.4.25. 인정)
  - 전수교육조교(3명) : 남기문(‘58년생, 남 / 꼭두각시놀음·장고, ’90.10.10 선정)  
지운하(‘47년생, 남 / 풍물, ’96.5.1 선정)  
진명환(‘48년생, 남 / 소고, ’02.2.5 선정)
  - 보유단체 : 남사당놀이보존회(‘86.11.1 인정)

#### (2) 사건경과

- 감사원이 남사당놀이 보존회(사단법인 남사당) 비위 의혹을 접수하고,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에 이첩(2012.8.22)
- 해외공연비 사기 및 이수증 부정발급에 대한 검찰고발(2012.10.18)
- 남사당놀이보존회 단체 및 사건 연루 전승자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(2012.12월)
- 검찰약식기소(2013.6월) 및 정식재판(2013.9.12. 선고)
-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(2013.9.13) 보고에 따라 해당 사건 선고 후 남사당놀이보존회 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지급 재개(2013.9월)

### (3) 형사사건 판결내용

- 혐의내용 :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
- 정식재판 결과 : 벌금형
  - 상소포기하여 1심 판결 확정(2013.9.19.)

### (4) 참고사항

- 관련 규정
  - 문화재보호법 제31조(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)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2.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  -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(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) 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유사 사례
  - 2008년 ○○○ 보유자 조□□이 경연대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수뢰,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유자 인정 해제
  - 2007년 ○○○○ 허□□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(집행유예)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유자 인정 해제

### 라. 검토의견

-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.

### 마. 의결사항

- 박용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‘남사당놀이’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함.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### 바. 특기사항 : 없음

## 7.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계획 검토

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의2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## 보고사항

안건번호 무형2013-06-011

1. **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전승자 총원 방침 검토 회의 결과 보고**
  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의2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안건번호 무형2013-06-012

2. **‘채화칠장’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관련 이의 제기 사항 보고**
  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의2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